



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
- 편집자 주 -

『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(안)』 입법예고

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0일 『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』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대상시설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(안)을 마련하여 10월 28일 입법 예고하였다.

□ 주요내용

- 먼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범위를 도로,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, 공동주택, 교통수단, 통신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정함.
-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신축·증축·개축·대수선·용도변경시 등에는 대상시설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경사로, 장애인용 화장실·승강기·공중전화,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,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.
 - 예를 들면, 정부청사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에 있는 단차는 2cm 이하로 턱낮추기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고 출입구 및 복도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, 건축물을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함. 또한, 장애인전용 주차구역,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또는 음성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.

- 또한 읍·면·동사무소, 정부청사, 종합병원, 터미널, 지하철역사 등 공공성이 특히 강한 시설은 기존 건축물도 2000년 4월까지(단, 철도역사와 지하철역사는 2005년 4월까지) 정비하여야 함.
- 다만, 편의시설 설치시 역사적인 건축물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과학기술의 발전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등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법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- 한편,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·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1회 부과하게 됨.

□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

- 동법 시행령(안)은 11월 1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경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임.
- 『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』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1일 이후부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, 임산부, 아동 등 시설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편의 및 사회참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1998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확정

□ 1998년도 기금운용규모: 14조 4538억원

〈부문별운용규모〉

(단위: 억원, %)

계	공공부문	복지부문	금융부문
144,538(100.00)	90,000(62.3)	1,750(1.2)	52,788(36.5)

-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리 산정방식 개선
- 1998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후 정부예산안과 함께 보고를 위해 국회에 제출됨.
- 동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은 신규조성액 12조 6537억원에 투자원금 회수금 3조 8356억원을 포함하여 총 16조 4893억원으로서 연금급여 등에 2조 355억원을 사용하고, 나머지 여유자금 14조 4538억원은 공공부문에 9조원, 복지부문에 1750억원, 금융부문에 5조 2788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함.
- 부문별 투자비중은 공공부문이 1996년도 62.5%에서 다소 감소한 62.3%이고, 복지부문은 금년도 4.6%에서 1.2%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한 보육시설 용자지원사업이 종료되어 동 사업금액 2000억원이 미계산되었기 때문이며,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500억원으로 책정됨. 이에 따라 금융부문은 전년도 32.9%에서 36.5%로 증가함.
- 국민연금의 내년도 총수입은 사업장가입자 보험료가 6%에서 9%로 인상되는 등 연금보험료 수입이 약 3조 5400억원, 기금운용수익에서 8800억원, 회수금에서 1조 7800억원이 늘어 총 6조 2000억원이 증가, 올해보다 약 60% 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.

4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서비스 시험평가 시행계획

□ 시험평가의 실시 목적

- 병원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평가기준 및 조사방법을 개발·보완하여 평가도구를 완비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함.
- 평가준비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촉진과 의료관계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형태를 환자중심으로 유도하고자 함.

□ 평가대상 병원

- 400병상 미만 병원 40개소: 단, 평가대상 병원중 개설 1년 미만 병원 및 정신과 전문병원 등 특수병원은 제외함.

□ 평가기간 : 1997년 12월 1~6일(병원당 2일간)

□ 평가문항 및 조사방법

- 평가문항: 업무수행 성과, 환자만족도, 기본시설·인력수준과 관련한 사항으로 하되, 병원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함.
- 조사방법: 평가지침에 의한 현지확인·조사 및 환자면담조사
- 평가방법 보완: 평가받은 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일부 평가문항에 대해 불시 확인조사를 실시함(예, 진료·투약대기시간 등).

□ 평가단 구성 및 교육

- 평가받은 평가대상기관의 규모에 맞게 구성함.
- 평가요원은 전문성의 확보와 장기적 활용측면을 고려하여 평가분야별 관계전문가로 선발·평가단을 구성하되, 사전교육과 지역간 교차배치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함.
- 평가단 구성: 20개반 편성(1개반당 10명)
 - 반편성: 의사 2, 간호사 4, 약사·의무기록사·영양사·병원관리자 각 1명
- 평가단 교육: 1997년 11월 26일(수)~27일(목)

□ 평가결과 허용

- 평가결과는 평가받은 병원에 개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, 이를 토대로 평가기준 및 조사방법 등의 평가도구를 정비·보완해 나감.

무주택 장애인세대주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실시

보건복지부는 금년 11월부터 장애인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급(임대·분양)시 공급물량의 5% 정도를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.

□ 1997년도중 공급주택 물량

- 경기 용인 수지지구 428가구 중 20가구(공급확정)
- 경기 가평 등 소재의 8,323가구 중 411가구(공급예정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주민주택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공급물량의 10%내에서 장애인, 보훈대상자, 철거민 등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
- 보건복지부는 국민주택등 공급시 공급물량의 5% 정도를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에 시달함.

□ 특별분양 대상주택

-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국민주택(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)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,
- 금년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용인군 수지면의 임대주택 20가구(전체물량 428가구(1997년 11월)가 장애인 특별분양 물량으로 확정되었고, 임대주택 2,227가구(1997년 12월) 및 분양주택 6,055가구(1997년 12월) 중 5%는 금년중 장애인에게 공급하도록 추진됨.

1997년 사설납골당 설치자금 용자대상자 선정

보건복지부는 장기 저리의 사설납골당 설치자금 용자 지원을 통하여 납골당의 확대 및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장묘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 이용상의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해 사설납골당 2개소에 총 7억원의 용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용자를 추천하고 11월말까지 추가로 용자 신청을 받아 나머지 자금 23억원을 용자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용자 선정 기준 및 대상자

- 보건복지부는 건축허가 취득 여부와 담보능력 및 사업능력 등 사업 시행

● 정책동향

가능성, 시설의 종류와 규모, 주민 이용도 및 민원 발생 여부 등과 이에 대한 시·도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.

- 이번에 용자를 추천한 사설납골당 용자 지원 대상자 및 용자 규모는 경기도 고양시 장안사 5억원과 전남 장성군 백양사 2억원 총 2개소 총 7억원임.

□ 용자 규모, 기준 및 조건

- 총 용자규모는 30억원으로 사설납골당 신축비의 50% 범위내에서 지원하되, 표준 규모(연건평: 250평) 이상 건축하는 경우 개소당 5억원 이내로 하고, 기타 표준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평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며, 용자 조건은 연리 7.7%,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임.